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13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희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22. 10. 31. 체결된 155,000,000원 증여계약을 50,805,2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05,2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가. 별지 청구원인 1항 기재 사실 및 소외 C과 피고는 부부관계였으나 2022. 7. 11.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소외 C인 자신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을 매도하면서, 2022. 10. 31.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는, 소외 C이 2022.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위 155,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범위 내인 50,805,2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소외 C이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이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피고에게 2022. 10. 31. 155,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C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가 C을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E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금원 상당을 C 또는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게 바로 송금하였다(송금액의 단순 합계액은 187,100,000원에 이른다).

② C과 2022. 6. 3. 이혼합의를 하였는데 위 이혼합의서 중 제4항은 'C은 C의 사유로 발생한 피고의 부채(E공제회 대출금 전액)을 2025년 말까지 상환한다. 이를 위해 매월 2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C과 피고는 2022. 7. 6.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22. 7. 11. 이혼신고를 마쳤다.

③ C은 그 이후인 2022. 9. 4. 자신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을 32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곧바로 자신이 E공제회에 부담하고 있었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당을 지급할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C이 자신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협의이혼 신고 이후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⑥ 설령 C과 피고 사이의 이혼 협의시 한 위와 같은 합의가 재산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E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가 부담하는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 약정 부분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15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별지